

서울고등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나20103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피고, 항소인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최종원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2. 11. 1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합527112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들에 대하여, 망 H이 2018. 7. 6.에 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및 I이 2018. 12. 21.에 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각 취소한다.

나. I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1. 4. 1. 접수 제310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양도액 20,00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5. 8. 17.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일부 이전된 양도액 20,000,000,000원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제1의 가.항 및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9행 내지 제9면 아래에서 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5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9행 내지 4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4행의 “2009. 4. 19.”을 “2009. 5. 1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7행 내지 제9면 6행을 삭제하고, 제9면 7행의 “아.”를 “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12, 13행의 “피고 E, F, G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9. 4. 3. 당시”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5행, 5,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 12행 내지 제20면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9면 아래에서 2행 내지 제22면 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5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데,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채무는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므로 그 부분에 대응하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참조).

한편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가 회사, 신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감경된 경우에 면제 또는 감경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30.자 2017마600 결정 참조).

(2) 인정사실

(가) M은 1997. 1. 28.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1999. 7. 27. 정리계획 인가결정(이하 '제1차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4. 9. 24.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이하 '제2차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각 인가결정은 각 결정일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될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L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제1차 인가결정으로 인가된 정리계획안(이하 '이 사건 정리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L은행의 '금융기관 및 기타 정리채권'으로 총 162,032,164,545원이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포함한 금융기관 및 기타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은 주채무 원금에 해당하는 확정채권액의 30%를 2008년까지 거치하다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에 걸쳐 년 1회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변제되지 않는 나머지 주채무 원금과 개시 전 및 개시 후 이자, 보증채무 전부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제1차 인가결정에 따라 면제된 확정채권액의 70% 등 부분을 이하에서 '제1차 면제 부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후 제2차 인가결정으로 인가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하 '이 사건 변경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정채권액의 13.5735%를 1차 변제하고 0.8707%를 추가로 변제하되(이하 '변제 부분'이라 한다) 추가 변제 후에도 변제되지 않는 확정채권액은 면제하는 것으로 그 변제계획이 변경되었다[제2차 인가결정에 따라 면제된 확정채권액의 15.5558%(= 30% - 13.5735% - 0.8707%) 부분을 이하에서 '제2차 면제 부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법원은 2009. 5. 19. M이 이 사건 변경계획에 따라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를 완료함으로써 정리계획을 모두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3) 피담보채권 중 변제 부분(확정채권액의 14.4442%)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는 2009. 5. 19. M이 이 사건 변경계획에 따라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대한 변제를 완료함으로써 종결되었으므로, 물상보증인인 망인과 그 상속인인 I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변제 부분은 위 종결이 있기 전에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4) 피담보채권 중 제1차 면제 부분(확정채권액의 70% 등)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제1차 면제 부분은 그 소멸시효가 L은행이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정리계획에 대한 제1차 인가결정이 확정된 1999. 7. 27. 무렵부터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4. 7. 27. 무렵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5) 피담보채권 중 제2차 면제 부분(확정채권액의 15.5558%)(가) 소멸시효 기간(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감경된 경우에 면제 또는 감경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제2차 면제 부분은 이 사건 변제계획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여신거래로 인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다. (ㄴ)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구 회사정리법 제145조 및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된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M에 대하여 진행된 회사정리절차에 의할 경우 M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정리계획에 대한 제1차 인가결정 이전에 이미 조사를 마치고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후 1999. 7. 27. 제1차 인가결정에서 78,037,449,997원이 반영된 바 있으므로, M에 대한 채권은 정리계획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정리채권자표의 기재 시점에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구 회사정리법 제145조가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금액은 정리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정리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등 참조), ② 채권조사절차는 정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엄격한 인부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의 정리계획인가결정과 달리 구 회사정리법 제145조의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인가 전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자가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바, 민법 제165조 제1항이 정하는 판결 등과 같이 정리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와 그 효력이 다르다고 할 것인 점, ③ 구 회사정리법 제145조의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위와 같은 정리절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확정된 정리채권이 후에 정리절차의 진행 도중에 다시 다투어져 정리절차의 진행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실체법적 권리 자체를 쟁송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리절차 내에서의 불가쟁의 효력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M에 대한 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45조의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ㄷ) 피고들은, 위와 같은 구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따른 시효기간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획에 따라 면제된 제2차 면제 부분은 제1차 인가결정에서 인정된 권리로서, 소멸시효기간이 제1차 인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36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의 변경은 이를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 즉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있을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권리변경이나 면책의 효과도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때 원래의 정리계획

중 변경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고, 효력을 잃지 않는 나머지 부분과 변경계획이 일체가 되어 하나의 정리계획을 형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2차 인가결정에 저촉되는 제1차 인가결정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데, 제2차 면제 부분은 이 사건 변경계획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므로, 제2차 인가결정 이후로는 제2차 면제 부분을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기산일(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제2차 면제 부분의 소멸시효는 L은행이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정리계획에 대한 제2차 인가결정이 확정된 2004. 9. 24. 무렵부터 다시 진행하기 시작한다. (ㄴ)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2차 면제 부분은 이 사건 변경계획에서 면제예정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면제가 예정된 채권에 대한 면제의 효력은 변경계획 확정 시점이 아닌 추가 변제를 완료하는 시점 또는 추가 변제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추가 변제를 완료한 시점은 2009. 4. 21. 또는 추가 변제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 2009. 5. 19.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계획이 ‘본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른 채무면제의 효력은 추가 변제를 완료하는 시점 또는 추가 변제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서 관리인이 2009. 4. 21. 마지막 추가 변제를 실시하였고, 정리법원이 2009. 5. 19.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회사정리법 제5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정리절차의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이는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종료시까지의 회사정리법상 각종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등으로 그 권리행사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그 채권자는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이후로는 더 이상 정리절차에서 면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설령 그

면제의 효력이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어느 시점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제2차 면제 부분의 소멸시효가 2009. 4. 21. 또는 2009. 5. 19.부터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제2차 면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다) 소멸시효 완성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제2차 면제 부분은 그 소멸시효가 L은행이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변경계획에 대한 제2차 인가결정이 확정된 2004. 9. 24. 무렵부터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9. 9. 24. 무렵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래) 소멸시효의 중단^(나) 피고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 12. 12. M의 연대보증인들인 W, X, Y, Z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8681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이행청구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주채무에 해당하는 제2차 면제 부분의 소멸시효는 2008. 12. 12. 중단되었다가 2009. 9. 19.부터 다시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참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M의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청구는 주채무자인 M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니) 피고들은, 망인과 그 상속인인 I이 2018. 7. 6. 및 2018. 12. 21.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 또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합의서상 의사표시는 제2차 면제 부분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2004. 9. 29. 무렵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8. 7. 6. 이후에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회생절차종결일인 2009. 5. 19.이나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판결 확정일인 2009. 9. 19.부터 기산하더라도 5년이 훨씬 경과하였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망인과 그 상속인인 I은 제2차 면제 부분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아닌 망인과 I의 이 사건 각 합의서상 의사표시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ㄷ) 한편, 피고 B가 2018.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R), 제2차 면제 부분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2004. 9. 29. 무렵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8. 7. 24.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다. 피고 C가 2015. 9.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O), 이 역시 2004. 9. 29. 무렵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5. 9. 1.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회생절차종결일인 2009. 5. 19.이나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판결 확정일인 2009. 9. 19.부터 기산하더라도 5년이 더 경과하였다),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O 임의경매개시결정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취소되고, 그 결정이 2018. 9. 1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또한 민법 제17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6) 소결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 또는 시효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창, 판사 김세중, 판사 김종우